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안전 플러스

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. 11. 27.(금)

# 식약처, 영유아용 화장품 사용 시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안내

- 영유아용 화장품, 피부 알레르기 유발성분 등 표시 사항 꼼꼼히 살펴야
- 이상 사례 발생 시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 보고

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는 최근 발표한 '25년 화장품 안전성 정보 보고*에서 보고 건수가 가장 많았던 **영유아용 화장품****의 **올바른 사용 방법**과 **주의사항**을 **안내**한다고 밝혔다.

* '25년 화장품 안전성 정보 보고 건수는 총 1,285건이었으며, **영유아용 556건 (43.2%)**, 기초화장용 475건(37.0%), 인체 세정용 107건(8.3%) 순으로 나타남

** 영유아용 제품류는 3세 이하의 영유아가 사용하도록 고안된 제품으로 영유아용 샴푸, 로션, 오일, 인체 세정용 제품, 목욕용 제품 등이 있음

**영유아의 피부**는 성인 피부에 비해 각질층과 표피가 얇아 **외부 환경**이나 **화학 성분** 등 작은 **자극**에도 **붉어지거나 가려움**이 **발생**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**화장품 사용** 시 **세심한 주의**가 필요하다.

**식약처**는 **영유아용 화장품**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**사용할 때의 주의사항**과 화장품에 **사용할 수 없는 원료** 및 **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** 등을 **고시*** 하고 있다.

* 「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」, 「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, 「화장품의 색소 종류 및 기준」

먼저, **부틸파라벤, 프로필파라벤, 이소부틸파라벤, 이소프로필파라벤** 등 보존제가 **함유**된 영유아용 제품류에는 "**3세 이하 영유아의 기저귀가 닿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말 것**"이라는 주의사항을 **표시**하도록 하고 있다. 이는 **기저귀**가 닿는 부위가 **습하고 온도가 높으며**, **피부 자극**이나 **감염**, **피부염**이

**발생**하기 쉽고, 이로 인해 **화장품** 성분의 **피부 흡수**가 **증가**할 수 있기 때문이다.

또한, **살리실릭애씨드** 및 **그 염류** 함유 제품(샴푸는 제외)과 **아이오도프로피닐 부틸카바메이트**(IPBC) 함유 제품(목욕용제품, 삼푸류 및 바디클렌저 제외), 색소 중 **적색 2호**(아마란트, Amaranth)와 **적색 102호**(뉴콕신, New Coccine)는 **영유아용 제품**류에 **사용할 수 없는 원료**로 **규정**하고 있다.

이외에도 영유아용 화장품은 **향료** 성분 중 **알레르기 유발성분***이 함유된 경우, **해당 성분명**을 제품에 **표시**하도록 하고 있다.

* 「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」 [별표2]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

따라서 보호자는 **영유아용 화장품**을 **구매**하거나 **사용**하기 **전**에 제품의 **용기**나 **포장**에 기재된 **사용할 때의 주의사항**, **전성분** 및 **사용방법**을 꼼꼼히 **확인**하고, **영유아**의 **피부 상태** 등을 **고려**하여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. 특히 **특정 성분**에 **알레르기**가 있는 영유아는 **해당 성분**의 **함유 여부**를 **확인**해야 한다.

아울러, **18개월 이하 영유아**는 주변 사물을 손으로 잡아 입으로 가져가는 **구강기의 특성**이 있어 **화장품**이 **묻은 손**을 **빨거나** 용기 자체를 통해 내용물을 **섭취할 위험**이 있다. 따라서 화장품은 **영유아**의 **손이 닿지 않는 곳**에 **보관**하거나, **용기**가 **쉽게 열리는 제품**은 **마개** 등으로 **단단히 고정**하여야 한다.

만약 영유아에게 화장품 **사용 후 두드러기**, **가려움**, **붉어짐** 등의 **이상 증상**이 나타나면 **즉시 사용**을 **중단**하고, 증상이 **지속**되는 경우 **의사**의 **진료**를 받는 것이 좋다.

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**이상 사례**가 **발생**한 경우 **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*** 및 **화장품책임판매업자**에게 보고할 수 있으며, 화장품 사용으로 **피해가 발생**한 **경우**에는 「소비자기본법」 제55조제1항에 따라 **한국소비자원(국번 없이 1372)**에 **피해구제**를 **신청**할 수 있다.

* 의약품안전나라(nedrug.mfds.go.kr) → 전자민원/보고 → 전자보고신청 → 화장품 안전성정보보고(소비자용)

식약처는 앞으로도 **화장품 유형별 안전 사용 정보**를 **지속적**으로 **제공**하여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장품을 보다 **안전하게 사용**할 수 있도록 **지원**할 계획이다.

<붙임> 1.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
2. 영유아용 화장품 올바른 사용법 안내 카드뉴스

| 담당 부서 | 바이오생약국<br>화장품정책과 | 책임자 | 과 장 | 김지연 (043-719-3401) |
|---|---|---|---|---|
| | | 담당자 | 연구관 | 이지선 (043-719-3403) |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## 붙임1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

| 연번 | 성분명 | CAS 등록번호 |
|---|---|---|
| 1 | 아밀신남알 | 122-40-7 |
| 2 | 벤질알코올 | 100-51-6 |
| 3 | 신나밀알코올 | 104-54-1 |
| 4 | 시트랄 | 5392-40-5 |
| 5 | 유제놀 | 97-53-0 |
| 6 |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| 107-75-5 |
| 7 | 아이소유제놀 | 97-54-1 |
| 8 | 아밀신나밀알코올 | 101-85-9 |
| 9 | 벤질살리실레이트 | 118-58-1 |
| 10 | 신남알 | 104-55-2 |
| 11 | 쿠마린 | 91-64-5 |
| 12 | 제라니올 | 106-24-1 |
| 13 | 아니스알코올 | 105-13-5 |
| 14 | 벤질신나메이트 | 103-41-3 |
| 15 | 파네솔 | 4602-84-0 |
| 16 |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| 80-54-6 |
| 17 | 리날룰 | 78-70-6 |
| 18 | 벤질벤조에이트 | 120-51-4 |
| 19 | 시트로넬올 | 106-22-9 |
| 20 | 헥실신남알 | 101-86-0 |
| 21 | 리모넨 | 5989-27-5 |
| 22 | 메틸 2-옥티노에이트 | 111-12-6 |
| 23 | 알파-아이소메틸아이오논 | 127-51-5 |
| 24 | 참나무이끼추출물 | 90028-68-5 |
| 25 | 나무이끼추출물 | 90028-67-4 |

※ 다만,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는 0.01% 초과,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0.001% 초과 함유하는 경우에 한한다.

**붙임2** **영유아용 화장품 올바른 사용법 안내 카드뉴스**



















